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850

발의연월일: 2022. 8. 12.

발 의 자:이철규·태영호·서일준

권명호・김도읍・金炳旭

김학용 · 이양수 · 구자근

강기윤 · 김정재 · 김선교

박수영 · 김기현 · 박덕흠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의 조성·육성·이용·재해예방·복구·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·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을 정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추진 중이나, 다수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없거나 정 확하지 않은 관계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 때에 화재목에 대한 벌목 등의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산불 피해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산림사

업 실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산림사업으로 산사태 등 2차산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림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,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산림사업의 시행) ① 산림 제22조(산림사업의 시행) ① ---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 아 시행할 수 있다. <단서 신 -----. 다만,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 설> 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 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 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,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 시·군·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 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 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 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 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